

독일의 학생장기결석 대응 관련 법제

신청기관 ▶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I. 들어가는 말

지난 12월 인천에서 자기 집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배고픔을 못 이겨 맨발 차림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과자봉지를 집어 들고 주저앉은 사건이 있었다. CCTV에 찍힌 이 소녀는 11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했고 허약해 보였다. 나중에 이 소녀는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국내에서 연이어 계속 터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622건이고 이중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년간 5만5484건으로 하루 평균 15.2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대 사건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1차적인 인지기관인 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의 장기 결석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였다는 것이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촉장’을 보내도록 돼 있다.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학생이 결석하면, 학생 거주지의 읍·면·동장이 해당 가정에 대해 다시 출석 독촉을 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지속되면 시도 교육감에게 보고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기관이 하나같이 ‘출석 독촉’만 할 뿐 해당 부모가 이를 무시할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매뉴얼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현행법이 무단결석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있다. 초·중등 교육법은 아동의 무단결석 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해당 아동을 학칙에 따라 ‘정원 외(外) 학적자’로 관리한다. 이른바 ‘학업 유예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의 공식적인 관리·감독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석에 연연하지 않는 이른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관리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법제와 교육현실에서는 학대의 위험에 놓여있는 장기 결석학생들이 발생해도 학교 당국에서는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장기결석 학생의 대응에 관한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제도 개관 및 특색

1. 교육제도 개관¹⁾

독일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학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독일의 교육은 모든 교육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

1) https://de.wikipedia.org/wiki/Bildungssystem_in_Deutschland.

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3세에 유치원(Kindergarten)에 다니기 시작하고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Grundschule)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이후 독일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 상위학교를 진학한다. 상위학교에는 크게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게잡트슐레(Gesamtschule)가 있다.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절반 미만으로, 직업전문학교 준비를 위한 학교이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문기술을 이용해 취업을 할 수 있다. 졸업 후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교육하며, 직업교육(Ausbildung)을 받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의 외국어(대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졸업 시험은 없으며, 이후 직업 전문학교에의 입학이 가능하다.

실업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는 상업, 사무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경제와 행정 분야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학교로 김나지움과 하우프트슐레의 중간 수준이다. 6년 과정으로 10학년 졸업 후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나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로 진학하여 상급 단계의 직업훈련을 받거나 김나지움 상급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김나지움(Gymnasium)은 9년간의 교육과정 후 Abitur를 보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 학습지식은 물론 다양한 과목들을 보다 창조적이고 심층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구 서독지역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9년 과정이고, 김나지움 상급 학년(Gymnasium Oberstufe)인 11학년부터 13학년 학생들은 몇 개의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전공할 분야를 미리 선택 준비할 수 있어 대학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게잡트슐레(Gesamtschule)는 Hauptschule, 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세 학교 형태들을 혼합한 종합학교이다. 기초학교 졸업 후 이러한 학교제도는 호환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또 후에 잘못 내려진 결정을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보완책으로 1970년대 초에 사민당의 주도로 생겨난 것이 종합학교이다.

2. 교육제도 특색

독일 교육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Charakterbildung)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일 것이다.²⁾ 독일의 인성교육은 총체적이다. 즉 한두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독일 학교에서의 학습은 교과과정이 느리고 여유 있는 진도로 유명하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성적이 점수화되지 않고 6단계(매우 좋음, 좋음, 만족스러움, 충분함, 부족함, 불충분함)로만 보고된다. 중·고등학교에 가더라도 모든 시험은 논술형이고 6단계로만 평정되므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독일의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이 끝나면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필수적으로 자전거 교육과 수영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동아리 활동,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실용적인 기능 학습 등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즉 인성을 학습할 기회가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독일의 사회적 조건,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보장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술을 배워 기능장(Meister)이 되면 가족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은퇴 후에도 국가에서 충분한 연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은 학교에서 저 경쟁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여지를 넓게 남겨둔다.³⁾

2) § 1 Kinder- und Jugendhilfegesetz(KJHG) nennt "Entwicklung und Erziehung zu einer eigenverantwortlichen und gemeinschaftsfähigen Persönlichkeit" als Ziel der Förderung junger Menschen durch die Kinder- und Jugendhilfe und als ihr Recht.

3) http://www.mediansung.com/web/news/subHot.php?mode=view&number=2077&page=1&b_name=school5&lvs=.

독일에서는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4학년까지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1명의 담임선생이 있고, 학생들은 4년간 반이 바뀌지를 않고 한반에 25~3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4년간 공부를 한다.⁴⁾ 일반적으로 담임선생이 체육을 포함한 전체 과목을 담당 한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 4년 간 학생을 이들이 가진 성적과 재능을 관찰한다. 교사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진학을 결정을 하여 마지막으로 부모를 불러서 상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가정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도 그만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독일에서는 가정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학교교육 의무(Schulpflicht)를 규정하고⁵⁾ 있고,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양육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⁶⁾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장기간 결석한다는 것은 독일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바로 교사나 학교 당국에 의해 바로 바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인성교육 분위기와 학교에서의 엄격한 규칙 적용 등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무단결석을 한번 하면 바로 정학처분이 내려지거나 학부모를 소환하고, 두 번 하면 퇴학도 가능하다. 학교는 학부모에 학교생활안내서(Hausordnung)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규칙을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있을 것을 공지한다. 폭력이나 폭행, 폭언은 곧바로 학

4) <http://goworld.tistory.com/185>.

5) Artikel 145 ff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6) <http://www.faz.net/aktuell/beruf-chance/campus/warum-ist-hausunterricht-in-deutschland-verboten-13303144.html>.

부모에게 연락되어 가정과 학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교사는 교양시민계급의 하나로서 독일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나 처분에 관하여 학부모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의 바탕에는 가정에서의 엄격한 훈육과 학교에서의 엄격한 교칙이 깔려 있다.

III. 교육 및 아동 청소년 보호법제

1. 기본법상의 근거

독일의 교육에 관한 기본법 조항은 제7조⁷⁾이다. 특히 제1항에 모든 학교제도가 국가의 감독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학교에 대한 감독권 국가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에 대한 행정상의 독점적 결정권을 국가만이 보유할 수 있었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이론으로 정당화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학교에 대한 감독 활동은 내부적 조직권한에 의거한 행정부의 고유한 사항이며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내적 사무의 국가에 의한 지배와 관리, 특히 교육계획의 작성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방법 교육절차 및 징계에 관한 명령 등을 모두 포함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본

7) 독일기본법 제7조(학교제도)①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양육권자는 자녀의 종교수업 참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종교수업은, 종교와 관련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합치하게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저서는 안 된다. ④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학교로서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시설 및 교육인력의 교수능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른 학생의 선별이 조장되지 않을 때 인가될 수 있다. 교육인력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혹은 사립초등학교가 종파 혼합학교, 종교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공립초등학교가 Gemeinde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양육권자들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인가될 수 있다. ⑥ 예비학교는 폐지된다.

8) 노기호,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제한”, 법과 정책연구 2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195~196면.

래 자유로워야 할 학교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학교제도에 대한 기본법상의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리와 교육에 관련된 여러 주체의 기본권의 존중의 원칙에 근거하고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한 교육이 전개되었다.⁹⁾ 비록 이와 같이 독일 기본법에서는 학교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법은 또한 16개의 주에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각 주에게 부여하고 있다.¹⁰⁾ 이에 대부분의 주는 주 헌법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의 교육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주 법을 통한 교육의무의 규정은 주의 권리라고 인정한다.¹¹⁾

독일 기본법 제6조¹²⁾에 의하면, 아동양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국가는 자녀의 부양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활동을 감시하며,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자녀를 방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해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의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연방이나 주 정부는 이러한 장기결석을 방치한 부모의 행동을 감시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

9) 노기호,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제한”, 법과 정책연구 2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195~196면.

10) Nach dem deutschen Grundgesetz sind die 16 Bundesländer für den Bereich der Schule weitgehend allein zuständig. In Ausübung der sogenannten Kulturhoheit entscheidet jedes Land selbst, wie es sein Schulwesen gestaltet und seine Lehrkräfte ausbildet.

11) So steht in Art. 7 Abs. 1 GG: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Staates“, woraus sich nach ein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ch das Recht der Länder ergibt, durch Landesgesetze die Schulpflicht zu bestimmen. ([https://de.wikipedia.org/wiki/Schulpflicht_\(Deutschland\)](https://de.wikipedia.org/wiki/Schulpflicht_(Deutschland))).

12) 독일기본법 제6조(혼인, 가족, 혼인 외 출생자)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들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③ 양육권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거나 그 밖에 그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 법률에 근거해서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를 가족과 격리시킬 수 있다. ④ 모든 어머니는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 외 출생자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이러한 학생들의 처리에 있어서 엄격한 감시감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기본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교육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상의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중시와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제1조), 인성의 자유로운 발달에 관한 권리(제2조), 자신의 출생계급에 의해 소외되지 않는 권리(제3조), 청소년보호(제5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2. 독일 형사법과 주 학교법에서의 형사처벌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법에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 학대죄 외에도 개별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171조(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 제174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제180조(미성년자의 성적 행위 조장),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남용), 제232조(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 제3항 등이 해당 규정들이 그것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지침으로 사건에 대한 공익적 고려 및 피해 아동 보호 등 수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증언과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조사에 대하여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결정권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력 제공 및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있다.¹³⁾ 경찰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상담 및 수사 부서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 중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2005년 4월 18일 독일 북부의 랑엔호른에 사는 14세의 소년이 생후 12년간 아버지에 의해 집 안에

13) <https://m.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2180>.

감금된 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학대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좁은 집에 엄마와 함께 갇혀 있던 미하엘(가명)은 아빠가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당시 학대의 가해자인 미하엘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었는데 그는 아내의 신분증을 없애고 집밖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에 그의 직장 동료들은 물론 주변 이웃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미하엘의 존재를 접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미하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빠는 나를 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늘 창문을 통해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걸 지켜봤어요”라고 말한바 있었다.

이러한 미하엘 사건의 역우 미하엘의 출생자체를 학교 당국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만일 학교에 다니다가 장기결석이 되면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는 2007년 ‘카롤리나(Karolina)’ 사건이 있다. 3세 카롤리나가 심하게 학대당한 채 병원 여자화장실에 버려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카롤리나의 엄마와 동거남으로 카롤리나의 사망은 엄마가 범죄 전력이 있는 마약중독자와 동거에 들어간 뒤 3주 만에 발생했다. 이 기간에 카롤리나는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영하의 날씨에 캄캄한 지하실에 갇히기도 했다. 아이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카롤리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 3세인 피해자가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오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맞아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위 동거남에 대해 살인죄와 학대죄로, 방임 및 가담한 친모에 대하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¹⁴⁾

14) <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urteil-im-mordfall-karolina-masterplan-des-sadismus-a-418019.html>.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하엘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었기에 학교 당국에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다만 여기서 독일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장기결석 아동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71조(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에 의하면, 16세 미만자의 보호 또는 교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발육을 현저히 해하거나 범죄성향을 지니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행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결석은 그 자체로 보호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교육의무의 현저한 위반이고 신체적·정신적 발육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학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의 교육법¹⁵⁾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헤센주에서는 아들이 수업을 빼 먹는다고 부모님이 6개월간 징역형(Freiheitsstrafe auf Bewährung)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¹⁶⁾ Frankfurt 주 최고법원(Oberlandesgericht)은 아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략 37일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위와 같이 선고했다. 그녀는 헤센 주 학교법 위반으로 이미 Lampertheim의 지방법원 지원(Amtsgericht)과 Darmstadt의 주 법원(Landgerichts)에서 벌금형(Geldstrafe)과 양육권(Sorgerecht)의 부분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들의 보호의무를 해태하자 매우 강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당시 판사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보호는

15) § 182 Hessisches Schulgesetz(Schulgesetz – HSchG)(1) Wer einen anderen der Schulpflicht dauernd oder hartnäckig wiederholt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2) Die Verfolgung tritt nur auf Antrag ein. Antragsberechtigt ist die untere Schulaufsichtsbehörde. Der Antrag kann zurückgenommen werden.

16) Aktenzeichen 2 Ss 413/10.

국가 시민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¹⁷⁾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자녀의 무단결석을 방치한 어머니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첫 학년에 이미 95일을 결석했으며 17세가 된 현재에는 총 결석일수가 1,000일가량이라 한다. 17세인 학생은 현재 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계산도 할 수도 없으며 사회적 태도에도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해당 어머니는 다섯 자녀를 둔 문맹자로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¹⁸⁾

비단 부모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장기결석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독일의 주 교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지역의 직업학교 학생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업을 너무 자주 빼먹어 50유로에서 240유로에 이르는 총 14통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스무 살의 그 학생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학생의 총 벌금액은 2,720유로(한화 400만원)이다. 그는 63일간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적용되는 법은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verfahren)이다. 이는 정규학교뿐만 아니라, 직업학교에도 적용된다.¹⁹⁾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교육의무(Schulpflicht)는 대부분 주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17)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sohn-schwaenzte-schule-mutter-muss-sechs-monate-ins-gefaengnis-a-756586.html>.

18)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1000-fehltage-mutter-von-schwaenzer-zu-haft-auf-bewahrung-verurteilt-a-918021.html>.

19)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bussgelder-nicht-bezahlt-schulschwaenzer-muss-63-tage-in-haft-a-763840.html>.

3. 기타 아동 청소년 보호법제

독일에서는 아동복지국이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및 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면서 각종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순수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양육에 개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Gesetz zur Neuordn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rechts: KJHG, BGBl. I S. 1163)은 1995년 12월15일 개정으로 아동복지국에 아동학대예방조치의 책무를 부과하고,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1조제3항)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KJHG 제1조²⁰⁾ 기본 원칙에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부모의 양육책임권(Elternverantwortung) 그리고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제1항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을 촉진, 책임감 있는 인간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함양하고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 권리, 제1조 제2항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이지만 부모의 권리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이 명시되어 있다. KJHG 제1조 제3항에는 법의 실현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것과, 사회적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할 것(제1호),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자녀교육 상담과 지원 제공(제2호), 위기로부터의 행복

20) KJHG –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1 Recht auf Erziehung, Elternverantwortung, Jugendhilfe.(1) Jeder junge Mensch hat ein Recht auf Förderung seiner Entwicklung und auf Erziehung zu einer eigenverantwortlichen und gemeinschaftsfähigen Persönlichkeit.(2) Pflege und Erziehung der Kinder sind das natürliche Recht der Eltern und die zuvörderst ihnen obliegende Pflicht. Über ihre Betätigung wacht die staatliche Gemeinschaft.(3) Jugendhilfe soll zur Verwirklichung des Rechts nach Absatz 1 insbesondere 1. junge Menschen in ihrer individuellen und sozialen Entwicklung fördern und dazu beitragen, Benachteiligungen zu vermeiden oder abzubauen, 2. Eltern und andere Erziehungsberechtigte bei der Erziehung beraten und unterstützen, 3. Kinder und Jugendliche vor Gefahren für ihr Wohl schützen, 4. dazu beitragen, positive Lebensbedingungen für junge Menschen und ihre Familien sowie eine kinder- und familienfreundliche Umwelt zu erhalten oder zu schaffen.

보호(제3호)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성장하도록 아동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 보존과 조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KJHG는 교육기간이 길어져 청소년의 시기가 연장되면서 2005년에 초기성인을 지원하는 아동 청소년계속발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weiterentwicklungsgesetz)의 제정에 기여하였다. KJHG 제8조a에는 아동 청소년의 행복 침해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므로 청소년청(Jugendamt)이 가족법(Familienrecht)에 의거해 과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²¹⁾ 이외에도 아동복지국은 양육권자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8의a조 제3항),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 가정법원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4일 ‘자녀의 복리의 위험에 대한 가정법원조치의 편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법원이 아동복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모를 원조하고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통한 법원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부모의 친

21) KJHG –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8a Schutzauftrag bei Kindeswohlgefährdung ① Werden dem Jugendamt gewichtige Anhaltspunkte für die Gefährdung des Wohls eines Kindes oder Jugendlichen bekannt, so hat es das Gefährdungsrisiko im Zusammenwirken mehrerer Fachkräfte abzuschätzen. Dabei sind die Personensorgeberechtigten sowie das Kind oder der Jugendliche einzubeziehen, soweit hierdurch der wirksame Schutz des Kindes oder des Jugendlichen nicht in Frage gestellt wird. Hält das Jugendamt zur Abwendung der Gefährdung die Gewährung von Hilfen für geeignet und notwendig, so hat es diese den Personensorgeberechtigten oder den Erziehungsberechtigten anzubieten. ② In Vereinbarungen mit den Trägern von Einrichtungen und Diensten, die Leistungen nach diesem Buch erbringen, ist sicherzustellen, dass deren Fachkräfte den Schutzauftrag nach Absatz 1 in entsprechender Weise wahrnehmen und bei der Abschätzung des Gefährdungsrisikos eine insoweit erfahrene Fachkraft hinzuziehen. Insbesondere ist die Verpflichtung aufzunehmen, dass die Fachkräfte bei den Personensorgeberechtigten oder den Erziehungsberechtigten auf die Inanspruchnahme von Hilfen hinwirken, wenn sie diese für erforderlich halten, und das Jugendamt informieren, falls die angenommenen Hilfen nicht ausreichend erscheinen, um die Gefährdung abzuwenden. ③ Hält das Jugendamt das Tätigwerden des Familiengerichts für erforderlich, so hat es das Gericht anzurufen; dies gilt auch, wenn die Personensorgeberechtigten oder die Erziehungsberechtigten nicht bereit oder in der Lage sind, bei der Abschätzung des Gefährdungsrisikos mitzuwirken. Besteht eine dringende Gefahr und kann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nicht abgewartet werden, so ist das Jugendamt verpflichtet, das Kind oder den Jugendlichen in Obhut zu nehmen. ④ Soweit zur Abwendung der Gefährdung das Tätigwerden anderer Leistungsträger, der Einrichtungen der Gesundheitshilfe oder der Polizei notwendig ist, hat das Jugendamt auf die Inanspruchnahme durch die Personensorgeberechtigten oder die Erziehungsberechtigten hinzuwirken. Ist ein sofortiges Tätigwerden erforderlich und wirken die Personensorgeberechtigten oder die Erziehungsberechtigten nicht mit, so schaltet das Jugendamt die anderen zur Abwendung der Gefährdung zuständigen Stellen selbst ein.

권제한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모의 친권이 제한된 이후에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처우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국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 제42조), 아동을 단독으로 보호하려면 친권자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사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의a 제3항, 제42조 제3항).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의 자립성을 촉진할 교육의 중요성(제1626조)이 명시되어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녀의 능력개발과 요구를 만족시켜 자율적 인간으로 양육시키는 것이며, 자녀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법원이 아동과 관련해 판시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행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 강조되었다. 친권상실을 명시하고 친권 또는 방임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행복이 침해당했을 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 보호를 위해 청구가 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개입해, 친권 박탈 및 아동의 행복 보장을 실천할 것(제1666조)을 명시하였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독일에서의 장기결석과 관련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살펴 보았다. 교육을 규정한 각 주의 개별적인 법령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지 독일에서 학부모로 있는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장기 결석 아동에 관한 학교와 아동보호청의 대응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교장 이현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먼저 독일 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고 있었고,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독일 초등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최선의 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독일의 기본법과 각 주의 헌법 및 교육법에 의해 아동은 학교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모 또한 양육의무로서 학교출석을 시킬 의무를 진다. 정부는 학생과 양육자가 의무교육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특히 담임이 4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장기결석의 경우, 바로 파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특히 홈스쿨링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 교육제도의 특성상 더욱 그러하다. 일단 학생이 미리 결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통보 없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바로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아파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석이 길어지면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바로 아동보호청에 신고를 한다. 이러한 학교의 공적 지원은 국가가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학교고권(Schulhoheit)에 의하여 각 주의 청소년청(Landesjugendamt)과 지역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프로그램의 실행과 교육내용의 계획, 수정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청소년지원에는 양육자의 아동양육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청은 경찰과 함께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집에 방문하여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다. 독일 경찰 유형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경찰이 있다. 보호경찰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학교 수업 중에 게임방이나 시내 골목 등에서 방황하거나 놀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 경찰차에 태워 학교장에게 인수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물론 시민들도 이러한 학생들이 잘 모이는 곳을 경찰에 제보하는 신고 정신이 무척 강하다.

독일은 1919년 이래 교육의 의무가 있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의무교육기간 9년 또는 10년 동안 학교에 반드시 재학하여야 하고, 홈스쿨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성공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만일 학생이나 부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은 학생대로 관련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가 발견되면 형법상 학대로 처벌가능하고 사망이나 상해 시 이에 상응하는 살인죄나 상해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현재 독일에는 1천2백만 가량 학생 가운데 매일 십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단결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주들은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단결석이 과도하게 잦은 학생을 대상으로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 주는 부모에게 1,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베를린 주는 학생이 무단결석할 경우 문자를 보내고, 함부르크 주는 일주일간 청소년 보호감호를 실시하며, 바이에른 주의 경우 경찰이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 선 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 노기호,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제한”, 법과 정책연구 2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https://de.wikipedia.org/wiki/Bildungssystem_in_Deutschland.
[http://www.mediainsung.com/web/news/subHot.php?mode=view&number=2077&page=1&b_name=school5&cls=.](http://www.mediainsung.com/web/news/subHot.php?mode=view&number=2077&page=1&b_name=school5&cls=)
<http://www.faz.net/aktuell/beruf-chance/campus/warum-ist-hausunterricht-in-deutschland-verboten-13303144.html>.
<https://m.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2180>.
<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urteil-im-mordfall-karolina-masterplan-des-sadismus-a-418019.htm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sohn-schwaenzte-schule-mutter-muss-sechs-monate-ins-gefaengnis-a-756586.htm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1000-fehltage-mutter-von-schwaenzer-zu-haft-auf-bewaehrung-verurteilt-a-918021.htm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bussgelder-nicht-bezahlt-schulschwaenzer-muss-63-tage-in-haft-a-763840.html>.